# 강원도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시행 2021.10.5.〕〔강원도경찰청 훈령 제290호, 2021. 10. 5. 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아동안전지킴이”란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아동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실종·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 활동 및 아동안전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소속) 아동안전지킴이는 각 경찰서장이 위촉하며, 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 소속 하에 활동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시행) 강원도경찰청장(이하 “도경찰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안전지킴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제2장 아동안전지킴이 모집 및 선발

제5조(모집·공고) ① 아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1. 고용노동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2. 강원도경찰청 및 각 경찰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구대·파출소 게시판 등에 게시

3.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수단을 통한 공고

② 아동안전지킴이의 모집·공고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집 기간(모집 기간은 공휴일 제외 7일 이상으로 한다.)

2. 사업참여 기간 및 모집 인원

3.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

4. 활동 시간 및 활동 내용

제6조(제출 서류) 아동안전지킴이에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배치 희망지역의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아동안전지킴이 자원봉사 지원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4. 아동 관련 업무에 대한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5.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성명,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6.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채용 신체검사서

제7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아동안전지킴이 선발에 관한 내용을 심

의하기 위해 경찰서에 아동안전지킴이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안전지킴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운영하는 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

3. 아동안전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장을 간사로 한다.

제9조(선발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아동안전지킴이 업무 수행 대상자를 선발하며,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지 않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경찰·군·소방·교정·학교 등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② 위원회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선발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측정·평가하기 위한 면접 및 체력검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강원도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4. 전년도 사업참여 도중 해촉된 자(단, 자진 요청자의 경우 제외)
5. 다른 지역 경찰서 모집공고에 이미 지원한 자(중복지원 제한)
6. 그 밖에 아동안전지킴이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위촉) 경찰서장은 아동안전지킴이를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고 한다)을 교부한다.

제12조(활동 기간) 아동안전지킴이의 활동 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같은 해 도경찰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3조(해촉) ① 경찰서장은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된 사람에게 제10조

의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위촉 후 결격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아동안전지킴이를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안전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결근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에 건강 상태의 악화 등으로 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경찰서장은 아동안전지킴이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위촉장 및 제11조에 따른 신분증, 복장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안전지킴이의 사망 등 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장 아동안전지킴이 임무 및 근무 방법

제14조(임무) 아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아동안전지킴이 근무일지'에 활동 사항과 실적을 기록한다.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통학로·놀이터·공원 주변 등 이 규칙 제16조 각호의 장소에서의 순찰 및 아동 지도
2. 위험에 처한 아동의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조치
3. 「아동복지법」 제34조 아동 긴급보호소(아동안전지킴이집 포함)

등과 연계 활동

4. 비행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교육

5. 그 밖에 성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및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제15조(복무원칙) 아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

2.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나 감독권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을 것

3.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를 비롯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직무수행과 관련한 관할 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 등의 지시를 이행할 것

제16조(근무지 지정) 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아동안전 보호 인력과 중복해서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교 통학로 주변

2. 공원·놀이터 등 아동이 빈번하게 활동하는 곳

3.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위하여 배치가 필요한 곳

제17조(근무시간) ① 아동안전지킴이의 근무시간은 평일 3시간 이내 범

위에서 아동이 빈번하게 활동하는 시간대로 지정한다.

② 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은 아동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학교의 학교장 등의 요청이 있거나 하교 시간의 변동,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동안전지킴이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근무 방법) ① 아동안전지킴이 업무를 수행할 때는 제11조에 따라 교부받은 신분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아동안전지킴이의 근무는 도보 순찰 또는 거점근무 등을 원칙으로 하며, 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이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근무 전·후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집결하여 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에게 근무시작 및 종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폭염·폭우·혹한 기타 기상이변 등으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경우 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이 교육·휴식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근무 관리) ①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또는 아동안전지킴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은 아동안전지킴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은 아동안전지킴이의 근무 지정, 출·퇴근 관리 및 현장 근무를 지도한다.

③ 아동안전지킴이는 2인 1조로 편성·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인력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① 경찰서장은 아동안전지킴이 위촉 후 효과적인 범죄예방 활동 수행 및 아동안전지킴이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은 근무 배치 전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점검 및 실적 보고) ① 경찰서장은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활동실적 등을 관리하고 매월 5일까지 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실태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③ 도경찰청장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실적을 6개월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복장 및 비용 등 지급

제22조(복장) ① 아동안전지킴이는 근무 시 경찰서에서 개별 지급된 아동안전지킴이 로고가 부착된 단체복과 모자를 착용하여야 하며, 신분증과 호루라기・활동 수첩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장 착용 시기는 기상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동절기(3~4월, 10~12월)에는 겨울용 점퍼와 모자를 착용한다.
2. 하절기(5~9월)에는 여름용 조끼와 모자를 착용한다.
3. 활동 수첩에는 근무시간 중 취급한 아동보호 등 활동 사항을 기록한다.

제23조(비용 등 지급) 도경찰청장은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아동안전지킴이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한다.

제24조(보험 가입) 도경찰청장은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보상을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부 칙(훈령 제290호, 2021. 10. 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아동안전지킴이 자원봉사 지원서

<table>
<tr><td rowspan="3">성명 및<br>인적사항</td><td>한 글</td><td colspan="3">홍 길 동</td><td rowspan="4" colspan="2">사 진<br>(3×4cm)</td></tr>
<tr><td>한 자</td><td colspan="3">洪 吉 童</td></tr>
<tr><td>주민번호</td><td colspan="3">410000-1000000(만 세)</td></tr>
<tr><td>현 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연 락 처</td><td>자택</td><td>사무실</td><td>휴대전화</td><td colspan="2" rowspan="2"></td></tr>
<tr><td></td><td></td><td></td></tr>
<tr><td>건강상태</td><td colspan="2">양호함, 고혈압, 당뇨병 등 상세 기술<br>(채용신체검사서 확인)</td><td>신체<br>치수</td><td>90호<br></td><td>95호<br></td><td>100호<br></td><td>105호<br></td><td>110호<br></td></tr>
<tr><td rowspan="4">결격사유</td><td colspan="5">내 용</td><td>○, ×표시</td></tr>
<tr><td colspan="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 종사 및 관여 여부</td><td></td></tr>
<tr><td colspan="5">- 아동, 여성 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경력(미수 포함) 여부</td><td></td></tr>
<tr><td colspan="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여부</td><td></td></tr>
<tr><td>구 분</td><td colspan="6">내 용</td></tr>
<tr><td>자격증</td><td colspan="6">청소년 관련 자격증, 경비지도사 등 업무 관련 자격증 기재</td></tr>
<tr><td rowspan="3">취업 취약<br>계층 여부</td><td>구분</td><td>저소득층</td><td>여성 가장</td><td>북한이탈주민</td><td>결혼이주자</td><td>한 부모 가정</td></tr>
<tr><td>O, X 표시</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가점 부여</td></tr>
<tr><td rowspan="4">경력 사항</td><td colspan="6">00경찰서 등 00년 근무</td></tr>
<tr><td colspan="6">00년 00월 00경찰서 퇴직</td></tr>
<tr><td colspan="6">00년 00월 00초교 배움터지킴이 활동</td></tr>
<tr><td colspan="6">00년 00월 00지역 00아파트 경비원</td></tr>
</table>

본인은 아동안전지킴이를 지원함에 있어,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성실히 활동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 . . .

지원자 홍 길 동 (인)

**○○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아동안전지킴이 관리 및 실종경보 시 이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항목 :** *사진, 성명, 주민번호, 주소, 소속, 연락처, 신체치수, 결격사유, 자격증, 경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안전지킴이 위촉에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_____ (인)**

**□ 개인정보의 제공**

◇ **제공받는 자 :** ***시·도 경찰청, 보조사업자, 민간 보험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비용 등 지급 및 단체상해 보험 가입*

◇ **제공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1 년***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_____ (인)**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의 처리**

◇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 **수집목적 :** *아동안전지킴이 관리 및 실종경보 시 이용, 단체상해 보험 가입용*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_____ (인)**

[별지 제3호 서식]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 | | | | |
|---|---|---|---|---|
| 대상자 | 성명 | (한글) | (자국어) | |
| | | (한자) | (영문) | |
|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 |

본인은 ○○시(도) ○○시(군·구) 아동안전지킴이 희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3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_____**시·도 경찰청장** 귀하

| 유의사항 |
|---|
|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제 2000 - 01호

#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경찰서 아동범죄 예방 및 안전지도를 위한 「아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합니다.

2000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 <전 면>

가로 : 5.4cm

세로 : 8.6cm

전면 : 하늘색바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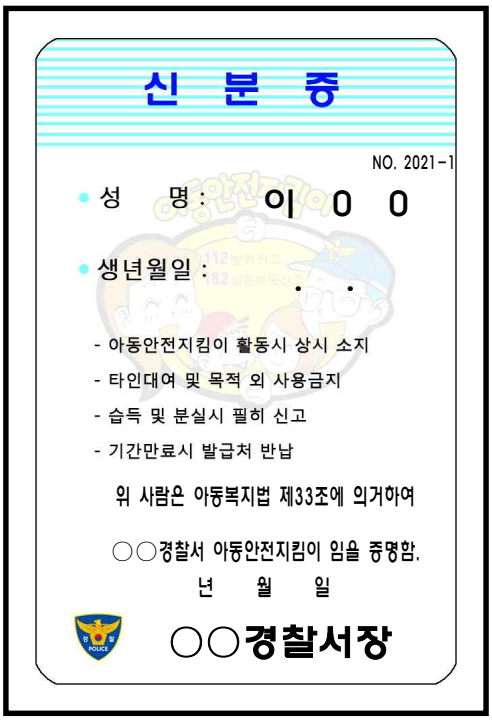
흑색글씨

후면 : 백색바탕

흑색글씨




## < 후 면 >



[별지 제6호 서식]

# 아동안전지킴이 근무일지

| 소 속 | 일 시 | 날 씨 | 지·파출소장(순찰팀장) |
|---|---|---|---|
| 00지구대 | 202O. O. O. ( ) 00:00~00:00 | 맑음, 흐림, 비, 눈, 기타 | (인) |

| 조 편성 | 근무 서명 (지킴이) | | | 지구대(파출소) 확인란 | | | | | |
|---|---|---|---|---|---|---|---|---|---|
| | 연번 | 성 명 | 서 명 | ① 출 석 | | ② 불 출 석 | ③ 발열체크 | | ④담당자 (관리팀 등) |
| | | | | 구 분 | 인 정 시 간 | | 출근 | 퇴근 | |
| 1조 | ① | ○ ○ ○ | | □정상 □지각 □조기종료 | □3 □2 □1 | □휴무 □결석 | | | |
| | ② | ○ ○ ○ | | □정상 □지각 □조기종료 | □3 □2 □1 | □휴무 □결석 | | | |
| 2조 | ③ | ○ ○ ○ | | □정상 □지각 □조기종료 | □3 □2 □1 | □휴무 □결석 | | | |
| | ④ | ○ ○ ○ | | □정상 □지각 □조기종료 | □3 □2 □1 | □휴무 □결석 | | | |
| 3조 | ⑤ | ○ ○ ○ | | □정상 □지각 □조기종료 | □3 □2 □1 | □휴무 □결석 | | | |
| | ⑥ | ○ ○ ○ | | □정상 □지각 □조기종료 | □3 □2 □1 | □휴무 □결석 | | | |
| 4조 | ⑦ | ○ ○ ○ | | □정상 □지각 □조기종료 | □3 □2 □1 | □휴무 □결석 | | | |
| | ⑧ | ○ ○ ○ | | □정상 □지각 □조기종료 | □3 □2 □1 | □휴무 □결석 | | | |

※ '지각' 또는 '조기 종료' 시 실제 활동시간만 인정 / **(주의) 대리서명, 소급서명은 엄금(해촉 사유)**

## 조별 근무장소 지정

| 근무조 | 00-00시 | 00-00시 | 00-00시 | 근무조 | 00-00시 | 00-00시 | 00-00시 |
|---|---|---|---|---|---|---|---|
| 1조 | 가, 1 | 가, 1 | 나, A | 3조 | | | |
| 2조 | 나, 2 | 나, C | 다, B | 4조 | | | |

| 배치 장소 | 초등학교 주변 | 아동범죄 취약지역 | 기타 |
|---|---|---|---|
| | *가. ○○APT 옆 놀이터(거점)*<br>*나. △△초등학교 주변 일대*<br>*다. ○○초등학교 주변 일대* | *1. ○○APT 옆 공터*<br>*2. ○○동 00빌라 인근 다세대*<br>*3. ○○재개발 지역 일대* | *A. ○○APT 옆 소공원*<br>*B. ○○동 근린공원*<br>*C. ○○동 소공원* |
| **거점 근무** | *▸'가' 지역에 공연음란범이 출현한다는 신고가 있어, '거점 근무' 실시* | | |
| **휴게 방법** | *▸휴게는 14:45~15:00, 15:45~16:00에 실시 / 놀이터·공원 등 공개된 장소 의자 등 활용* | | |

## 지·파출소장 지시사항

*▸근무조 간 몰려다니는 행위 금지 ▸최근, 활동복 탈의로 경고조치 사례 존재, 유의*
*▸최근 '가 지역'과 '3 지역'에 학교폭력, 청소년 흡연 신고 빈번하므로 유념하여 순찰*

| 구 분 | 활동사항 및 사례(지킴이) |
|---|---|
| 1조 | |
| 2조 | |
| 3조 | |
| 4조 | |

※ 근무종료 후 지·파출소 복귀, 활동사항 기재 / **(주의) 근무종료 10분 전 작성 불가 (50분부터 작성)**

| 점검결과 | *※활동 전·후 체온 확인한 바 이상없음.* | (불시 현장점검)<br>지·파장, 여청계 |
|---|---|---|